

# 심사보고서

-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정책복지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512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12. 14.(수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05일

-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서승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용어 수정 등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의 제명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가목)

-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의 제명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로 변경됨.  
(안 제2조제3항의나목)
-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의 제명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으로 변경됨.  
(안 제2조제3항의다목)
-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의 제명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으로, 일정등급  
“(「학교급식법행규칙」)”을“(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)”으로 변경됨.  
(안 제2조제3항의라목)
-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개정으로 “보육시설”이 “어린이집”으로 변경됨.  
(안 제4조제1항의제3호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#### 가. 조례안 개정 사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임.

#### 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2조(정의) 제3호 가목은,  
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이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2012. 6. 1)됨에 따라,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였음.
- 같은 조 나목 및 라목은,  
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과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이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으로 개정(2011. 7. 21)됨에 따라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였음.

- 같은 조 다목은,
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으로 개정(2010. 5. 25) 되었으므로,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였음.

- 안 제4조제1항제3호는,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“보육시설”을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규정된 “어린이집”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.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고, 일부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#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의가목 중 “친환경농업육성법”을 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의 나목 중 “농산물품질관리법”을 “농수산물 품질관리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의 다목 중 “축산물가공처리법”을 “축산물 위생관리법”으로, 일정 등급 “(「학교급식법행규칙」)”을 “(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)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의 라목 중 “수산물품질관리법”을 “농수산물 품질관리법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의제3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1. ~ 2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 <p>가. 「<u>친환경농업육성법</u>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</p> <p>나. 「<u>농산물품질관리법</u>」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</p> <p>다. 「축산법」 및 「<u>축산물가공처리법</u>」에 따른 일정등급(「<u>학교급식법</u> 시행규칙」)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</p> <p>라. 「<u>수산물품질관리법</u>」에 따른 품질인증품(원양산 포함)</p> <p>마. ~ 사. (생 략)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①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<u>보육시설</u>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「<u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</p> <p>나. 「<u>농수산물 품질관리법</u>」-----</p> <p>다. 「축산법」 및 「<u>축산물 위생관리법</u>」에 따른 일정등급(「<u>학교급식법</u> 시행규칙」)-----</p> <p>라. 「<u>농수산물 품질관리법</u>」에 --</p> <p>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따른 <u>어린이집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## <관련규정 법 제명 개정 연혁>

1. 친환경농업육성법 →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  - 개정일 : 2012. 6. 1.(법률 제11459호)
  - 주요내용 : 법 제명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을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  
2. 농산물품질관리법, 수산물품질관리법 →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  - 개정일 : 2011. 7. 21.(법률 제10885호)
  - 주요내용 :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과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을 통합
  
3. 축산물가공처리법 → 축산물 위생관리법
  - 개정일 : 2010. 5. 25.(법률 제10310호)
  - 주요내용
    - 법 제명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을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로 변경
    -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
  
4. 보육시설→어린이집
  - 개정일 : 2011. 6. 7. (법률 제10789호)
  - 주요내용 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보육시설 명칭이 어린이집(‘11. 12. 2.)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2조(정의)제2항 보육시설→어린이집으로 변경 **부 칙**